

#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고양이)

# ★ KB 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그린 <GREEN 지구 캠페인> KB손해보험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 종이약관 대신 모바일약관으로 시작하세요.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특별약관

제2장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고양이) 약관



## 제2장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 반려동물(고양이) 일반조항

##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猫)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고양이(猫)는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10세 (120 개월)을 초과하는 고양이(猫)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3. 특수한 목적의 고양이(猫) 4.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5.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 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반려동물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증상,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부 가 설 명 음식물

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물질)을 말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반려동물의료비의 보장개시일(이하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하의료비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의료비보험금의 총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1일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1일당 보	연간 총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상한도액
실속형	1일당 10만원 한도	1일당 150만원 한도	1,000만원
기본형	1일당 15만원 한도	1일당 200만원 한도	1,000만원
고급형	1일당 30만원 한도	1일당 250만원 한도	2,000만원

## 예 시 의료비보험금의 계산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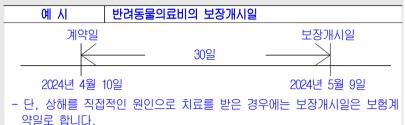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보상비율 90%, 자기부담금 1만원, 기본형 가입 기준

예시①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30만원
- ·지급금액 = {(30만원 1만원) x 9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예시(2)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 221만원
  - ·지급금액 = {(221만원 1만원) x 9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198만원
- ③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 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예시

- · 고양이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 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고양이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용어풀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치과/구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1. 반려동물의료비(고양이) 【갱신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치과/구강질환의 보장개시일(이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과질환(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 포함) 또는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 의료비를 「1. 반려동물의료비(고양이)【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부 가 설 명

- 핵연류물질 : 사용된 연류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예시

- · 고양이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 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MRI/CT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MRI/CT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MRI/CT보험금으로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고양이)【갱신계약】 특별약관 및 「2.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치과/구강질환)(고양이)【갱

신계약】 특별약관 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MRI/CT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비보험 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예 시 MRI/CT보험금의 계산

[MRI/CT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하도액 중 적은 금액

[MRI/CT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100만원 기준

예시(1)

- · MRI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7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75만원 15만원) x 90%, 100만원} 중 적은 금액 = 54만원 예시②
  - · MRI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1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15만원 15만원) x 90%, 100만원} 중 적은 금액 = 10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MRI/CT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①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MRI/CT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자기공명영상(MRI)"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용어풀이

- · 자기공명영상(MRI) :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영상진단법
- · 컴퓨터단층촬영(CT) : x선을 투과시켜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신체의 단면영상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영상을 얻는 영상진단법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예시

- · 고양이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 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약물치료, 연 간 6회한)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약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 의사에게 특정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특정약물치료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고양이)【갱신계약】 특별약관」 및 「2.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치과/구강질환)(고양이)【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특정약물치료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 비보험금을 차강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6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예 시 특정약물치료보험금의 계산

[특정약물치료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사하도액 중 적은 금액

[특정약물치료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10만원 기준

#### **側** (1)

- · 특정약물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5만원 15만원) x 9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9만원 예시②
  - · 특정약물치료 시행 당일 피부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5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55만원 15만원) x 9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1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1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은 이 특별 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에 「3.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고양이)【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특정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약물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토포인트(Cytopoint), 텔미살탄(Telmisartan),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또는 경구 항암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다.

#### 용 어 풀 이

- ·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 사이토포인트(Cytopoint)** : 아토피 등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텔미살탄(Telmisartan) : 신장질환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 심장질환 치료목적 성분 약물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찍는 것 또는 방사는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예시

· 고양이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 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이름[무지개다리위로금]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무지개다리위로 금의 보장개시일(이하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무지개다리위로금(고양이, 사망)으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은 이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용항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을 제5항에 따라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

- 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제1항의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은 총 장례비용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부가설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20만원 초과)]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총 장례비용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 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50만원 초과)]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총 장례비용이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70만원 초과)]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총 장례비용이 7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 특약 이름[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 1일이상 180일 한도)]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반려동물 위탁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에서 정하는 동물위탁관리업자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피 보험자의 입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제1항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한니다
-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시 수탁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하며 추가 식대, 용품 구매 등의 비용은 제외한 기본 비용에 한합니다.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